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112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 변호사 곽효진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1707 판결에 의하여 2013. 6. 8. 확정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2017. 12. 12.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3. 8.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12. 26. 기준 C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830,838,20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2. 5.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딸 C는 그중 2/9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였던 피고와 C 및 기타 상속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6.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C는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과 1960년경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농사 등을 하여 생계 및 망인의 재산 증식, 유지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는바, 망인의 자녀인 C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망인을 부양하고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100%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해오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은 망인의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로서 그 각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은 2012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파주시의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지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파주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영업소
1층 영업소 91.79㎡
2층 주택 91.79㎡
2. 경기도 파주시
대 105㎡

